

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(육계관련)

I. 사육기반확충

축산계열화 사업(공공)

① 가족계열화

1. 목적

○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능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
○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1~2001	2002	2003	2004	2005
닭·오리	사업량 14	(1)	2(1)	2(2)	3
금액	67,674	1,920	3,567	15,500	13,300

* () 내는 기선정 업체수임.

5.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설명

- 지원내용 : [별표 1] 참조
- 대상축종 : 돼지, 닭, 오리
- 자금지원대상자 : 시·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

○ 지원조건 : [별표 1] 참조

나. 대상자선정

(1) 신청자격

- 축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·허가·등록된 부화업, 종축업 및 도축업, 축산물종합처리장(육가공업 포함),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, 농업협동조합(지역, 업종) 및 중앙회, 영농조합법인, 유통업체 등
- 가족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.

· 닭·오리 : 종계(종오리) 및 부화장, 배합사료공장,

도계(도압)장, 육가공장사업종 2종이상 보유자

- 기타

·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.

·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,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.

· 육계·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 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, 육계는 50만수, 오리는 20만수 이상)이 있어야 함.

(2) 우선순위

-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

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
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·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
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
-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

- 생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

(3) 신청절차

〈별표 1〉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지원 범위	지원 조건	비고
1. 생산기반시설	○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, 종돈장 시설 ○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 시설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5%(농·축협 등생산자단체 4%) - 3년거치 7년균분상환	
2. 계열주체사육시설	○ 계열주체직영 비육돈·육계·오리 사육시설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	.	
3. 계열농가생산시설	○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	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
4. 가공시설(육가공공장 등)	○ '축산물도축·가공시설설치지원' 사업과 동일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5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4%) - 3년거치 7년균분상환	
5. 유통·판매시설	○ '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' 사업내용과 동일	.	
6. 계열화사육비	○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○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 등	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 5.5%, 2년이내 상환	

※ 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의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(사업희망 전년 1월말까지)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격요건,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신청(사업희망 전년 2월 말까지)
-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(사업희망 전년 3월말까지)

(4) 사업타당성 검토

- 농림부 장관은 학계·업계·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(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)
- 계열화사육비만을 지원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회 생략 가능
-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
- 주요심사내용 : 계열주체 자격요건, 부지확보여부

지역주민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, 계열요소구비사항, 사업계획서 타당성, 계열농가와와의 계약여부, 경영기록사항, 자금상환능력 등

(5) 계열화사업자 지정(별표2)

-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거나 시·도 지사가 계열화사업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.
-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

다. 자금지원방법

-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-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.
-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

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

-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 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.
-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
-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되, 기지원업체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액 등 결정(단,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사육비지원 불가)
 -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
 - 지원내용 :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(축산단지 포함)가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서 소요되는 종축입식,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
 - 작성내용 : 계열화 사업체제도, 계열농가명단,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 두수, 월간 및 연간생산·입식·출하두수,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, 연간 종축입식비, 기타운영사항

라. 2005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축종	사업비	축산발전자금		지방비	자담
		보조	융자		
돼지	29,000	-	20,300	-	8,700
닭·오리	19,000	-	13,300	-	5,700

마. 기타사항

-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,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(신규 및 보완사업)
 -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
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

- 계열사업 완성년도,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,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추발기금, 자부담구분)을 명시
- 사업추진규모
 - 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백만수(농가는 25호) 이상
 - 오리 : 연간 오리 생산·처리능력 1백만수(농가는 15호) 이상
-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
 - 닭(육계)·오리 :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가축개량사업(공공)

1. 목적

- 가축의 혈통등록, 능력검정, 유전평가,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
- 가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가축개량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
- 가축의 혈통등록 및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, 정확한 유전평가를 통해 생산성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 이용
- 국가단위 육종가 평가제를 확립하여 종축선발의 효율성 제고
-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이용한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활성화
-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을 통한 개량업무의 효율화 유도

3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 강구) 가축의 개량·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·시행
- 축산법 제7조(가축의 검정) 가축의 능력·개량정도를 확인·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
- 축산법 제39조(기금의 용도) 가축의 개량·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

4. 2005 사업별 지원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
		축발기금			지방비	자담	합계
		보조	용자	계			
한우개량		18,203		18,203		1,300	19,503
젖소개량		7,472		7,472	206	7,244	14,922
돼지개량		380		380		139	519
닭개량		230		230		122	352
종축등록 등		241		241		55	296
합계		26,526		26,526	206	8,860	35,592

5. 세부사업 시행요령

<닭개량>

(1) 기본방침

- 닭개량을 위하여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 추진
 -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계를 선발 보급
-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, 검정방법의 공정화,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
- 계종 선택지표 제공을 통한 양계농가의 편의 도모

(2) 연도별 닭개량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2	2003	2004	2005	2006~2013	
사업량(종)	1	1	1	1	1	
사업비	보조	2,878	316	267	230	10,000
	지방비					
	자부담	85	137	93	122	
	계	2,963	254	360	352	10,000

(3) 사업추진요령

<사업개요>

(가) 사업내용

1) 사업내용

- 시·군에 종계장 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

- 검정소 검정 : 4만4천수(산란계 30, 육용계 14)

- 농장검정 및 종계 일반검정 :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

2) 지원내용 및 보조재원

- 검정소 검정시설·장비와 검정사료비 및 질병검사비 지원

- 지원대상 : 대한양계협회

- 재원 : 축산발전기금 보조

·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

(나) 2005 사업비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	사업량	사업비					
		축발기금			지방비	자부담	합계
		보조	용자	계			
○ 사료비	44천수	180		180		122	302
○ 질병검사비	15회	30	30	30			
○ 시설비	1개소	20		20			20
계		230		230		122	352

II.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

축산물유통개선사업(공공)

① 축산물 도축·가공시설 설치지원

1. 목적

- 위생적인 도축·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- 부분육·냉장육·브랜드육·등급별 축산물 확대로 유통체계 구축
- 시유전문가공시설 설치로 우유 수급안정 및 낙농산업 발전 도모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영세하고,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·폐합 추진 및 기타가축 도축기반 마련
 - 고품질 및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
 - 유제품·시유시설 지원으로 낙농 기반구축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,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3	2004	2005(예산안)	2006이후
○ 사업량	30	25	23	-
○ 사업비	34,326	51,106	46,126	-
- 촉발기금 융자	24,028	35,774	32,288	-
- 지방비	-	-	-	-
- 자부담	10,298	15,332	13,838	-

5.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

(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)

- 1) 사업대상자 : 2004년 말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(휴업 또는 영업정지 업체 제외)
- 인접 시·도(시·군)의 기존도축장 2개소이상 통·폐합을 원칙으로 함
- 기타가축(소·돼지·닭·오리 외)의 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- 2) 지원용도 : 도축시설, 오·폐수 처리시설 및 기존 영업장 인수 소요자금 등(부지매입비 및 가공장 설치자금은 지원 제외)
- 3) 지원조건
 - 연리 4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(융자 70%, 자담 30%)
 - 사업기간 : 2~3년(사업계획에 의함)
 - 지원액 :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·반영
 - 단, 인수자금은 시설자금 지원액의 20% 범위내
 - 사업완료후 HACCP을 작성·운영하여야 함(정당한 사유없이 작성·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 회수)
- 4)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: ①사업계획서(별첨1) ②법인등

- 기부 등본 및 정관(사본)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사업신청자 통합 공증 각서 ⑦신용조사서(별첨2) ⑧기타 관련자료 등

※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
- 통폐합사업 신청시 지원대상자는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되, 통·폐합전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통·폐합 후 승계하며, 본 사업 완료즉시 기존 도축장 12개소 이상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서를 반납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동시에 제출
- 시·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폐쇄대상 도축장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동 작업장의 재가동을 위한 신규허가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 제출

(도축장 시설보완)

1) 사업대상자
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를 지정받거나 시·도지사로부터 HACCP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도축장 중 기존 도축장의 위생·환경시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사업자
- 기존 도축장중 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고자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사업자

2) 지원용도 : HACCP시설 보완, 도축·오폐수처리 시설(혈분제조시설 등) 지원

3) 지원조건

- 연리 4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(융자 70%, 자담 30%)
- 사업기간 : 1~3년(사업계획에 의함)
- 지원액 :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·반영

4)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: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(사본)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신용조사서(별첨2) ⑥기타 관련자료 등

※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
(오리도축장 시설보완)

- 1) 사업대상자 : 기존 오리도축장의 시설보완(이전을 통한 신축, 기존시설 개보수 등)
- 2) 지원용도 : 오리 도축시설(가공시설 포함), 오·폐수 처리시설 등(부지매입비 제외)
- 3) 지원조건
 - 연리 4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(용자 70%, 자담 30%)
 - 사업기간 : 1~3년(사업계획에 의함)
 - 지원액 :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 · 반영
- 4)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: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(사본)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신용조사서(별첨2) ⑦기타 관련자료 등
 - ※ (별첨 2)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
(축산물가공업체)

- 1) 사업대상자 : 고품질 · 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 · 저장시설, 운송 · 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
- 2) 지원조건 : 연리 4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(용자 70%, 자담 30%)
 - 사업기간 : 1~3년(사업계획에 의함)
 - 지원액 :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 · 반영
- 3) 지원내용
 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비, 가공 · 저장시설, 운송 · 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
- 4)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: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(사본)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신용조사서(별첨2) ⑦기타 관련자료 등
 - ※ (별첨 2)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
- 사업계획서내에는 사업개요, 가공장 시설계획,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,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(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), 사업시행일정,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(5개년) 등이 포함되어야 함.
 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우선순위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보고

나. 2005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(개소)	사업비					지방비	자부담
		사업비합계	예산액(축발기금)			자부담		
			계	보조	용자			
계	23	46,126	32,288	-	32,288	-	13,838	
도축시설 ¹⁾	7	9,240	6,468	-	6,468	-	2,772	
축산물가공시설 ²⁾	15	21,780	15,246	-	15,246	-	6,534	
시유전문가공시설 ³⁾	1	15,106	10,574	-	10,574	-	4,532	

- ※ 주1) 도축시설(용자금 6,468백만원) : 도축장시설현대화 4,018백만원, 도축장 시설보완 1,750,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700
- 2) 축산물가공시설(용자금 15,246백만원) : 축산물가공업체, 계란집하장, 유제품개발생산시설
- 3) 시유전문가공시설(용자금 10,574백만원)

② 축산물 도축·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

1. 목적
 -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
 -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
 -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
2. 시책 및 추진방향
 -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
 - 계란등급제를 도입하여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등급란 수집 및 판매자금 지원
 - 고품질 ·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
 -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브랜드경

영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유통브랜드경영체에 원료 육 구매자금 지원

-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유업체에 이관시 잉여물량에 비례하여 운영자금 지원

3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 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3	2004	2005(예산안)	2006이후
○ 사업량	29	60	149	-
○ 사업비	70,463	93,338	143,378	-
- 촉발기금 용자	70,463	93,338	143,378	-
- 지방비	-	-	-	-
- 자부담	-	-	-	-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(도축장)

- 1) 사업대상자 : HACCP 적용·운용중인 도축장 영업자로서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 상위권(33%) 및 중위권(33%)에 해당되는 업체
- 2) 지원조건 :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권에는 0% 금리, 중위권에는 3% 금리 지원, 1년거치 일시상환(공통)
- 3) 지원금액 : 총 57,832백만원
- 4) 지원단가
 - 가) 정부지원 관리 대상 7개 LPC의 경우 종전 지원기준대로 규모에 따라 지원

구 분	LPC명	지원단가
대규모	안성, 청원, 홍성, 김제, 군위	5,000백만원 이내
중규모	원주, 제천	3,000백만원 이내

- 단, 2004년도에 LPC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대출원금 상환일이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경우에는 동 평가와 무관하게 3% 금리로 해당 대출원금 범위내에서 지원
-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(임차)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

하여 생산·구매·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와 무관하게 LPC 규모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3% 금리로 지원

나) LPC를 제외한 도축장은 아래 도축물량 실적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

- 소·돼지를 함께 영업하는 도축장의 경우 소 또는 돼지 1개 축종 기준으로 지원

<세부 지원기준>

구 분	도축실적(2004년 기준)	지원단가
달	11,250천수 미만	400백만원 이내
	11,250천수 이상 16,875천수 미만	800백만원 이내
	16,875천수 이상	1,200백만원 이내

5) 지원용도

- LPC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, 고금리 차입금 총당, 원료구매자금 등으로 사용
- 도매시장·공판장은 출하약정선도금, 경락대금 결제 자금으로 사용
- 일반도축장은 인건비, 전기료, 일반관리비 및 HACCP운용 등을 위한 제반 운영자금
- 4)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 - LPC : 별표 1
 - 도매시장·공판장 : 별표 2
 - 기타 일반도축장 : 별표 3

(오리도축·가공장 운영활성화자금)

1) 지원조건

- 연리 5.5%, 1년거치 일시상환

2) 지원대상

-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설·운영 중인 오리 도축·가공장

- 축산발전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

3)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

- 오리도축·가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으로 사용(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, 고금리 차입금 총당, 원료구매자금 등)

※ 원료구매자금 지원기준

- 월 원료구매 소요액(월 구매물량 × 전년도 평균
산지가격의 70%)

4) 사업시행

- 사업계획서(자금사용계획 등)를 첨부하여 시·도에
신청(별표 4 서식)
-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
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
-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금 지원
-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기관에 용자신청을 하고 관
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

(축산물가공업체)

- 1) 사업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
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
및 생산자단체 등
- 2) 지원액 : 월 원료구매 소요액
- 3) 지원조건 : 연리 4%, 1년거치 일시상환
- 4) 사업주관기관 :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, 한국육가공
협회(2차 육가공업체 중 희망업체가 있는 경우)
- 5) 사업 시행절차
 -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
관 중 한 곳에 제출하고 협회는 검토결과를 농림부에
보고
 - 농림부는 사업비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희망업체
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사업주
관기관에 통보
 - 단,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직접 사업대상자이거나
비농협조합이라도 희망하는 업
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가능
(신청업체는 사업계획서에 대출
취급 희망기관 명기)

- 사업대상업체는 지원액 범위내에
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
-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
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대출관련
규정 및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

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 실시
나. 2005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 (개소)	사업비					
		사업비 합계	예산액(축발기금)		융자	지방비	자부담
계	149	143,378	143,378	-	143,378	-	-
○ 도축장	88	57,832	57,832	-	57,832	-	-
○ 오리도축장	4	1,891	1,891	-	1,891	-	-
○ 축산물가공업체	40개소	37,590	37,590	-	37,590	-	-
○ 계란등급시설	5	3,150	3,150	-	3,150	-	-
○ 한우고기 유통 브랜드경영체	12	7,875	7,875	-	7,875	-	-
○ 유통채 경영안정	110천톤	35,040	35,040	-	35,040	-	-

③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

1. 목적

- 식육소매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정예화하여 소매단체
유통개선 도모
-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확대 및 판로
확보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식육의 부분육·냉장육 유통활성화, 구분판매제(부위
별·등급별 쇠고기 종류별) 및 브랜드화 추진
- 식육소매유통시설, 브랜드가맹점, 닭고기체인점 사업
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지원

3. 근거법령 : 축산물 제3조(축산물전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	1993~2001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소매유통시설	사업량	2,052	75	85	사업량 :	사업량
	계	209,326	25,000	21,429	50개소	: 22개소
	사업비	187,313	17,500	15,000	사업비 :	사업비
	융자 자부담	22,013	7,500	6,429	25,000	: 10,700
브랜드가맹점	사업량	454	125	100	(융자 :	(융자 :
	계	99,400	30,000	26,600	17,500, 자담 :	7,500, 자담 :
	사업비	69,580	21,000	18,600	7,500)	3,200)
	융자 자부담	29,820	9,000	8,000		
닭고기체인점	사업량	-	10	20		
	계	-	9,750	19,500		
	사업비	-	6,825	13,650		
	융자 자부담	-	2,925	5,850		
합 계(축발기금 융자)		256,893	45,325	47,250	17,500	7,500

5.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식육소매시설개선

○ 사업대상자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법적 권장면적(10평) 이상의 식육판매 점포면적을 보유한 자
- 냉장육을 판매하고 있거나 냉장육 판매시설과 기술이 있는 자로서 식육의 구분판매(부위별·등급별·종류별), 원산지표시, 식육거래기록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타업소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

식육소매시설 개선사업 제외대상자

- 농·축·수협 판매점(회원조합 매장은 제외) 및 브랜드가맹점, 백화점, 수퍼마켓, 대형할인매장 등 이미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업소
- 부도발생 또는 화의 중에 있거나 관계법을 위반하여 계류중이거나 과거 (3년이내)에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식육판매업소

○ 개소당 사업비 : 기금 융자금 기준 20백만원 이상으로서 대상자별 자금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

○ 지원내용

- 냉장육판매·보관·진열시설·장비 및 인테리어 개·보수, 기타 부대시설 등

식육소매시설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

○ 사업대상자

- 식육소매시설 : 생산자단체 및 식육판매점(음식점 겸업포함)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
- 브랜드가맹점 : 정부 지원의 산지 축산물 생산·유통지원사업(브랜드사업) 대상자 중 직영 판매장이거나 생산한 브랜드육을 판매하기 위한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(음식점 겸업 포함)

○ 개소당 사업비 : 기금 융자금 기준 개소당 140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

* 규모별 지원기준 예시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0평 이상	30평 이상	50평 이상	100평 이상
용자(70%)	140	280	700	1,050
자담(30%)	60	120	300	450
계(100%)	200	400	1,000	1,500

○ 지원내용(자금의 용도)

- 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 신규건축, 기존건물의 매입, 건물임차료(융자금의 50%이내)
- 업소시설 : 냉장, 냉동, 판매(진열장), 포장, 인테리어시설, 운송차량,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(겸업 음식점의 경우), 기타부대시설 등

○ 시설기준

- 식육판매점포 면적 10평(33.0㎡)이상
- 식육판매진열장·냉장숙성실·냉동실·냉장육절기 설치
- 기타시설 :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[별표10]의 "6.축산물 판매업"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
-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40평(132.2㎡)이상(식육판매장소 포함)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닭고기체인점설치

- 사업대상자 :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- 개소당 사업비 : 기금 융자금 기준 개소당 30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
- 지원내용 : 판매장 시설비,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, 점포구입비(임차료 포함)

나. 지원조건

-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: 연리 5%, 3년거치 5년상환
- 식육소매유통시설 : 연리 5%, 5.5%(일반), 3년거치 5년상환

- 다음호에 계속...